|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 실행에 관한** **통지**세총함[2015]482호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局)내 각 조직:<'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국판발[2015]50호),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관철실행에 관한 통지>(공상기주자[2015]121호) 및 관련 문건의 취지에 근거하여 세무부서의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 실행에 관한 구체 업무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바 확실하에 관철 및 집행하기 바란다.**1. '삼증합일(三證合一)' 관련 문건의 취지를 확실하게 실행한다.**'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의 전면 추진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 전체회의의 취지 및 국무원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자 간정방권(簡政放權) 추진, 시장진입 편리화, 투자·창업 격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세무총국은 일련의 문건을 하달하여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 관련 업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각 급 세무기관은 대국(大局)적인 차원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전반적인 국면을 중요시하며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관련 문건의 취지를 열심히 습득·관철하며 부서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 항 업무절차를 개선하며 직위의 업무직책을 구체화하고 업무과제를 배분함에 있어 구체적인 담당인력을 확정함으로써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2. '삼증합일(三證合一)' 업무 연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관련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전국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 개혁을 전면 추진한다. 각 지 세무기관은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국세, 지방세간의 협력과 합작을 강화하며 각 관련 직능부서간의 업무분장과 협력을 원활히 하고 개혁 전후의 과도적, 연결적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기존 등기 방식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 방식으로 순조롭게 과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신규 설립되는 기업, 농민전문합작사(이하 '기업'으로 통칭)은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법인과 기타 조직 통일사회신용코드(이하 '통일코드'로 약칭)가 기재된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 더 이상 세무등기를 이행하여 세무등기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기업은 조세 관련 업무 처리 시 정보의 보충 수집을 마친 후 통일코드가 기재된 영업집조를 세무등기증 대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상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세무등기는 기존 법률제도에 따라 집행한다.개혁 이전에 발급한 기존 세무등기증서는 과도기내에 계속 유효하다.**3. '삼증합일(三證合一)' 관련 업무절차를 확실하게 규율한다.**공상등기는 '하나의 창구(一個窓口)'를 통해 통일적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서류와 등기정보는 부서간에 서로 공유하며 각 부서는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서류를 서로 인정한다. 각 급 세무기관은 등기기관과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등기정보 수집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각 성의 세무기관은 교환 플랫폼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기업등기 정보를 획득한 후 기업 주소(통일코드로 식별)에 따라 납세자 별로 현(구) 세무기관으로 배정한다. 현(구) 세무기관은 배정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시(지) 세무기관으로 반송하여 시(지) 세무기관이 다시 배정한다. 성 세무기관은 현(구) 세무기관으로 직접 배정할 수 없을 경우 시(지) 세무기관으로 배정한 후 시(지) 세무기관이 현(구) 세무기관으로 배정한다.세무기관은 공상등기 과정에서 이미 수집한 정보를 중복적으로 수집하지 아니한다. 기타 필요한 조세 관련 기초정보는 기업이 조세 관련 사무 처리 시 적시에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직접 세무기관에 변경을 신고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세무 시스템상의 기업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 방식을 이미 시행 중인 기업이 말소등기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세무주관기관에 세무정산을 신고하고 <세무정산 신고표>(첨부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은 국세, 지방세 중 임의 일방 세무주관기관에 세무정산 신고를 제출할 수 있고 세무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기업의 세무정산 신고 정보를 기타 일방 세무기관에 동시 전송해야 하며 국세, 지방세 세무주관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각각 세무정산을 진행하고 기한 내에 처리를 마친다. 세무정산이 완료된 후 일방 세무기관은 적시에 본 부서의 세무정산 결과를 신고를 접수한 세무기관에 통보하고 신고를 접수한 세무기관은 국세, 지방세 세무정산 결과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세무정산 증명>을 통일적으로 발행하고 교환 플랫폼 상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한다.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세무정산 신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즉석처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규모, 세금징수 방식, 납세신용 등급 지표에 근거하여 리스크를 분석한 후 리스크 등급이 낮은 경우 즉석에서 세무정산 수속을 처리완료하며; 의문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세무중개서비스기구가 발행한 감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확인조사,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탈세, 조세회피, 조세사기, 조세저항 또는 영수증을 허위발급한 사실이 발각되었거나 이전가격 조정이 필요한 등 상황이 발견된 경우 처리기한은 자연적으로 중지된다. 세무정산 후 제보 등 단서를 통해 세금을 과소신고, 과소납부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세무기관은 관련 정보를 등기관에 전송하고 '블랙 리스트'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과도기 내에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영업집조를 교체발급받지 아니한 기업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4. 정보기술의 받침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삼증합일(三證合一)'은 정보기술의 지원을 떠날 수 없다. 각 급 세무기관은 정보화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여야 하고 통일적인 규범과 표준에 따라 관련 정보 시스템을 보완 및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호연호통(互聯互通) 및 정보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일절 정보화의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고 온라인 실시간 전송을 실현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통일 신용정보 공유·교환 플랫폼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일절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기업의 기초정보 및 관련 신용정보를 교환 및 사용해야 한다.세무총국은 통일적으로 보급하는 종합 징수관리 시스템(국세), 증치세영수증 업그레이드 버전, 수출세 환급 시스템, 진수이(金稅) 3기 핵심 징수관리 소프트웨어 등 응용 시스템의 개조 업무를 완성할 계획이다. 각 성 세무기관은 <국무원의 통일사회신용코드 구축방안 조정 관련 정보 시스템을 실행할 것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판공청의 통지>(세총판발[2015]160호)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납세자 식별코드와 통일코드의 연결 방안을 실행하고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성급 정보 공유·교환 플랫폼을 구축하며 자기보유 세무응용 시스템 및 온라인 세무처리 등 시스템을 개조함으로써 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보급하는 시스템과의 접속을 실현해야 한다.**5. 조세 서비스 수준을 확실하게 향상시킨다.**조세 서비스를 개선하여 양호한 조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개혁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각 급 세무기관은 다양한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 정책을 홍보 및 해설하고 납세자들이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의 내용과 의미를 습득하고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에 따르는 편리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개혁을 이해하고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며 개혁을 지지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삼증합일(三證合一)' 세무지침, 납세지도책자, 세무처리절차도 등 홍보자료를 적극 제작하여 등기기관의 서비스 장소에 배포하거나 세무기관 웹사이트의 현저한 위치에 공표함으로써 취득·사용과 학습에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세무 간부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간부들로 하여금 신설·변경·말소등기 등 각 단계의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개혁의 내용과 의미를 통달하도록 함과 동시에 소질이 높고 업무에 능숙한 업무인력을 선정하여 창구 접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접수창구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6. 실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확실하게 한다.**감독검사와 감독관리는 실행을 촉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각 급 세무기관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의 실행을 감독관리하는 요구에 따라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개혁에 개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실시 과정에서 봉착한 중점 사항과 문제점들을 적시에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의 실적평가를 확실하게 진행하고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 업무를 2015년 4분기 실적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개혁 일정표, 노선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세무총국 또한 적시에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 특별 감독검사를 추진하여 업무 수행 효율의 저하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조직과 개인 특히 지도간부의 책임을 묻고 각 항 업무과제가 충분하고 원만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세무총국은 <조세 징수관리 업무 동향(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 특집>을 편집·발표하여 각 지의 개혁추진 상황을 보도함으로써 각 지가 상호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는 적시에 개혁 동향을 세무총국(징수관리과기사)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지는 2015년 10월부터 매달 종료 후 5일 내에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 관련 업무 추진상황, 구체적인 조치, 취득한 성과와 효과, 후속 감독통제 관련 데이터 및 업무 중에 봉착한 애로사항, 다음 단계 업무계획을 세무총국(징수관리과기사)에 보고해야 한다. 각 기관은 보고자료 뒷부분에 연락담당자의 정보(이름,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보고자료는 세무총국의 FTP(징수관리과기사/제도처/삼증합일(三證合一) 목록)로 업로드한다.국가세무총국2015년 9월 10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落实“三证合一”登记制度改革的通知**税总函[2015]482号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局内各单位：　　根据《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推进“三证合一”登记制度改革的意见》(国办发[2015]50号)、《工商总局等六部门关于贯彻落实〈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推进“三证合一”登记制度改革的意见〉的通知》(工商企注字[2015]121号)及有关文件精神，现就税务部门落实“三证合一”登记制度改革有关具体工作通知如下，请认真贯彻执行。　**一、切实落实好“三证合一”有关文件精神**　　全面推行“三证合一”登记制度改革是贯彻落实党的十八大和十八届二中、三中、四中全会精神以及国务院决策部署的重要举措，是推进简政放权、便利市场准入、鼓励投资创业、激发市场活力的重要途径。国务院、有关部门及税务总局陆续下发了一系列文件，对“三证合一”改革有关工作做出了详细部署并提出了明确要求。各级税务机关要站在全局的高度，充分认识“三证合一”改革的重要意义，顾全大局、主动作为，积极采取措施、攻坚克难，认真学习贯彻系列文件精神，加强部门间协作配合，优化各项工作流程，落实岗位工作职责，分解工作任务到人，确保“三证合一”改革顺利实施。　　**二、切实做好“三证合一”工作衔接**　　根据有关工作部署，2015年10月1日要在全国全面推行“三证合一、一照一码”登记改革。各地税务机关要加强与有关部门的沟通协调，强化国税、地税之间的协作合作，做好各相关职能部门之间的分工配合，统筹做好改革前后的过渡衔接工作，确保现有登记模式向“三证合一、一照一码”登记模式平稳过渡。　　新设立企业、农民专业合作社(以下统称“企业”)领取由工商行政管理部门核发加载法人和其他组织统一社会信用代码(以下称统一代码)的营业执照后，无需再次进行税务登记，不再领取税务登记证。企业办理涉税事宜时，在完成补充信息采集后，凭加载统一代码的营业执照可代替税务登记证使用。　　除以上情形外，其他税务登记按照原有法律制度执行。改革前核发的原税务登记证件在过渡期继续有效。　　**三、切实规范“三证合一”有关工作流程**　　工商登记“一个窗口”统一受理申请后，申请材料和登记信息在部门间共享，各部门数据互换、档案互认。各级税务机关要加强与登记机关沟通协调，确保登记信息采集准确、完整。　　各省税务机关在交换平台获取“三证合一”企业登记信息后，依据企业住所(以统一代码为标识)按户分配至县(区)税务机关；县(区)税务机关确认分配有误的，将其退回至市(地)税务机关，由市(地)税务机关重新进行分配；省税务机关无法直接分配至县(区)税务机关的，将其分配至市(地)税务机关，由市(地)税务机关向县(区)税务机关进行分配。　　对于工商登记已采集信息，税务机关不再重复采集；其他必要涉税基础信息，可在企业办理有关涉税事宜时，及时采集，陆续补齐。发生变化的，由企业直接向税务机关申报变更，税务机关及时更新税务系统中的企业信息。　　已实行“三证合一、一照一码”登记模式的企业办理注销登记，须先向税务主管机关申报清税，填写《清税申报表》(附后)。企业可向国税、地税任何一方税务主管机关提出清税申报，税务机关受理后应将企业清税申报信息同时传递给另一方税务机关，国税、地税税务主管机关按照各自职责分别进行清税，限时办理。清税完毕后一方税务机关及时将本部门的清税结果信息反馈给受理税务机关，由受理税务机关根据国税、地税清税结果向纳税人统一出具《清税证明》，并将信息共享到交换平台。　　税务机关应当分类处理纳税人清税申报，扩大即时办结范围。根据企业经营规模、税款征收方式、纳税信用等级指标进行风险分析，对风险等级低的当场办结清税手续；对于存在疑点情况的，企业也可以提供税务中介服务机构出具的鉴证报告。税务机关在核查、检查过程中发现涉嫌偷、逃、骗、抗税或虚开发票的，或者需要进行纳税调整等情形的，办理时限自然中止。在清税后，经举报等线索发现少报、少缴税款的，税务机关将相关信息传至登记机关，纳入“黑名单”管理。　　过渡期间未换发“三证合一、一照一码”营业执照的企业申请注销，税务机关按照原规定办理。**四、切实发挥信息技术的支撑作用**　　“三证合一”离不开信息技术的支持。各级税务机关要加大信息化投入，按照统一规范和标准，改造升级相关信息系统，实现互联互通、信息共享。凡是能够通过网络解决的都要充分利用信息化优势，实现网络实时传输，提高办事效率；凡是能利用统一信用信息共享交换平台的，都要通过共享平台交换并应用企业基础信息和相关信用信息。　　税务总局将完成统一推广的综合征管系统(国税)、增值税发票系统升级版、出口退税系统、金税三期核心征管软件等应用系统的改造工作。　　各省税务机关要按照《国家税务总局办公厅关于落实国务院统一社会信用代码建设方案调整相关信息系统的通知》(税总办发[2015]160号)要求，落实企业纳税人识别号与统一代码的衔接方案，配合有关单位，搭建省级信息共享交换平台，并改造自有税务应用类系统及网上办税等系统，实现与税务总局统一推广系统的对接。　　五、切实提升纳税服务水平　　优化纳税服务，营造良好的税收工作环境是“三证合一、一照一码”改革顺利实施的重要方面。各级税务机关要充分利用各种媒体做好“三证合一”登记制度改革政策的宣传解读，让广大纳税人了解“三证合一”改革的内容、意义，知晓“三证合一”改革带来的便利，在全社会形成理解改革、关心改革、支持改革的良好氛围。要积极编制“三证合一”办税指南、纳税辅导小册子、办税流程图等宣传材料，并放置于登记机关服务大厅，或在税务机关网站显著位置公布，方便取用和学习。要加强对税务干部的培训，让广大干部熟悉新设、变更以及注销登记等各环节的操作流程，精通改革内容和意义，同时，选派素质高、业务精的工作人员承担窗口受理工作，不断提升窗口服务质量。　　**六、切实狠抓督办落实**　　督查督办是抓落实的重要手段。各级税务机关要按照一级抓一级、层层抓落实的要求，加强对“三证合一、一照一码”改革的督导检查，及时发现和解决实施中遇到的重点难点问题。要落实“三证合一”改革的绩效考核工作，将“三证合一”改革工作列入2015年第四季度绩效考核，按照改革的时间表、路线图考评考核。税务总局也将适时组织开展“三证合一”改革专项督查，对工作开展不力造成严重后果的单位及个人尤其是领导干部进行问责，确保各项工作任务不折不扣地圆满完成。　　为了各地相互借鉴经验，共同推进“三证合一”改革，税务总局将编发《税收征管工作动态(三证合一改革专辑)》，刊载各地改革进展情况。各地要及时将改革动态报税务总局(征管科技司)。同时，自2015年10月起，每月终了后5日内，各地要将“三证合一”改革相关工作推进情况、具体措施、取得成效、后续监控相关数据及工作中的困难、下一步工作计划报税务总局(征管科技司)。各单位要在报送材料后加注联系人信息(姓名、联系方式)。报送材料请上传至税务总局FTP(征管和科技司/制度处/三证合一目录下)。国家税务总局2015年9月10日 |